

의 정 정 보

2008 - 4

4. 10.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1
3. 최근 타 시도 제정조례	40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49
〈부록〉 : 행복한 책임기	66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

《질 의》

제18대 총선을 맞이하여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 선임과 관련한 질의를 보내드리오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현행 정치관계법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해당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후원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후원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3. 3. 국회의원 정성호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정권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총괄·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당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조기축구회 방문 축구공 제공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제18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갑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 자격으로 본 의원과 함께 영등포구갑 각 조기축구회를 직접 방문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구 저변확대 차원에서 각 팀에 각각 축구공 10개씩을

기증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질의 하오니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 행위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5조 제5항의 규정 사항입니다.

※ 정관 내용

제 5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구경기의 승인 및 운영

가. 회원단체의 경기

나. 외국 팀과의 경기

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라. 경기규정의 제정, 집행 등 경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축구행정 및 지원

가. 축구 일반 행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

나. 축구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3. 국제 업무

가. 국제 축구기구에 대한 대표 기능

나. 대표선수 선발 및 경기 참가 주관

4.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가. 선수 양성 및 관리

나. 지도자, 심판의 양성 및 관리

다. 축구전문 행정인 양성 및 관리

5. 축구 인프라 구축

가. 축구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나. 축구 저변 확대

다. 축구자료의 축적 및 관리

6. 홍보

가. 협회 및 회원단체의 업무 홍보

나. 각급 대표팀 및 경기 홍보

7. 복지 및 권익보호

가. 협회, 회원단체 등의 복지 및 권익 보호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8. 내부관리

가. 협회운영,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

9.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한 각종 지원

가. 장·단기 축구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계획 수립 (2008. 3. 6. 국회의원
전여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3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만의 축하기회 제공 등

《질 의》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단체 행사시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축하 또는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고, 일반 예비후보자에게는 축하 또는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행사주최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현역국회의원만 축하 또는 인사말을 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2. 선거사무소 개소식관련

가. 내빈(초청된 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축사 가능여부 및 신상진 국회의원 띄우기 어느 정도 가능한가?

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후보명의로 위촉장 수여가 가능한지?

다. 후보명의로 불가능하다면 당대표나 경기도당위원장 명의로 위촉장 수여가 가능한지?

라. 개소식 초청장 문안에 국회의원 얼굴 사진과 후원계좌 안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2008. 3. 7. 국회의원 신상진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걸 맞는 행사에서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와 관련 없는 의례적인 축하를 하게 하거나 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2. 문 2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초청을 받은 내빈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2의 나·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사무소가 아닌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를 두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3에 위반될 것임.

4. 문 2의 라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사진이나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계좌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정치자금법」 제15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안내문 등 게시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과거의 선거풍토에서 벗어나,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거,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선거사무원 중심의 선거운동보다는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방법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게시하거나 또는 게시문중에 기재하는 방법
- 모집분야 : 전화팀, 인터넷팀, 대담토론팀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
- 질의자 의견 : 공직선거법 제62조제7항에서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것은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임. (2008. 3. 13. 김미정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3항에,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별도의 조직·단체를 설립하는 때에는 87조제2항에 각각 위반될 것임. (2008.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선전벽보등 부착용 자동차에 광고물 첨부

《질 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선거구에 전철 이미지(KTX와 유사)를 유세차량외 5대(후보자 승차차량 및 지원유세차량, 선거지원 차량)에 랩핑을 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당연히 유세차량은 별 문제가 없음으로 알고 있으나, 선거 지원차량(5대)의 소유주들이 해당 선거구의 영원 사업인 전철의 조기 개통을 위함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지원차량에 후보와의 관계(기호, 이름, 당명) 등은 전혀 관계없는 랩핑입니다.

차량랩핑 : 기업의 브랜드, 상품이미지를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후 특수하게 제작된 PVC필름에 확대출력하여 승용차, 탑차, 버스 등 다양한 차량외관에 홍보를 목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을 말함.

귀 선관위에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 3. 14. 시흥시갑국회의원예비후보자 함진규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라 선전벽보, 선거공보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에 선전벽보·선거공보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전국어린이집연합회의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 등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는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라는 전제조건에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하고 동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선거운동 적법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단체는 일반 국민이 아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보(잡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바 특정 후보와 정책연대를 결정하게 되면 회원에게 알릴 목적으로 정책연대 추진배경, 이유, 후보자의 약력 및 사진, 연대협약서 등을 회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는 자동차에 선전물 부착시 후보자마다 5대 이내의 범위에서 선전벽보 5매와 선거공보 5매의 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이 없는 바, 그렇다면 자동차 5대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첩부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여부?

3. 본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후보자의 선전차량 후미를 따라 다닐 수 있는지 여부? (2008.3.10.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노광기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선거에서 정책연대 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단순히 그 결정 사실과 이유 등을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발행·배부해오던 내부 기관지에 게재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1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8. 3.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7] 선거구가 다른 후보자가 동일인을 연설원으로 선임한 경우

《질 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1항과 관련하여 동일인을 후보자간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연설원으로 지명하여 신고한 경우 명문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같은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의 법규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A지역선거구 甲정당 후보자가 지명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연설원인 동일인을 B지역선거구 乙정당(또는 무소속)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연설원으로 지명(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3. 18.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를 연설원으로 선임하는 등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8]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등

《질 의》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으로서 내부 규정에 의한 정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지지후보를 결정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중에 지지후보당선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조치들이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POP-UP 게시(저희는 통상 체육행사, 이벤트, 자체위원장 선거 등이 있으면 홈페이지 메인에 POP-UP을 게시하고 있음)
2.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를 표시하여 이름을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
3. 지지후보에 대한 후보자등록 사실과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 게시
4. 지지후보자에게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원거리 거주 조합원들의 편의성을 위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회장을 수임자로 하여 정치자금 영수증과 위임장을 후원회에서 분회장에게 발송하여 분회장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정치자금법 별지14호 서식의 위임장) (2008. 3. 21. 조영호 질의)

《답 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사실이나 그 후보자를 위하여 할 자원봉사활동 등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별도의 인쇄물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16조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2008.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9] 천에 비닐재질의 시트를 붙여 제작한 선거운동용 현수막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주식회사 커뮤택)는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의 안전용(도로표지판, 안전장비, 주의 표지 등)에 국한되어 활용되던 단색의 반사 시트지를 다양한 인쇄가 가능하도록 응용하여 기존의 안전용 뿐만 아니라 광고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 및 중동지역에 수출을 개시한 상태이며, 국내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일반광고시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홍보물 적용에 앞서 당사제품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귀 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당사 제품(현수막)의 특성

☐ 제작 방법

일반현수막의 천 표면에 선거운동을 위한 문구가 게재된 시트를 덧붙여 제작함.

○ 시트(sheet, 덮개) 재질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등 비닐재질로서 다양한 휘도로 빛을 반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야간에 외부의 약한 조명에서도 일반 시트보다 인쇄된 문자 및 문양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음.

□ 질의사항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라 후보자가 당사의 시트를 활용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008. 3. 24. 주식회사 커뮤택 대표이사 이동익).

《답 변》

귀문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천에 비닐재질을 덧붙여 제작·게시하는 것은 그 현수막을 천으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879호, 2008. 02. 29. 공포]

1. 개정이유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 관련 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개선함으로써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권행사의 보장(안 제6조제2항 신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기사심의대상 확대(안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261조제4항제5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기간행물 이외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도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안 제10조의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안 제10조의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마. 장애인의 부재자 신고(안 제38조제2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안 제47조의2 및 제230조제6항 신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 당내경선 운동방법의 확대(안 제57조의3제1항제3호)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당내경선비용의 국고부담 확대(안 제57조의4제2항)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위탁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자. 선거공약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의 제시(안 제60조의3제1항제4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함.

차. 예비후보자공약집(안 제60조의4 신설)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함.

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 및 발송(안 제65조제8항 신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함.

타. 선거공약서(안 제66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같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으로 제한하며,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하고,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며, 선거사무장 등 외에 후보자의 가족과 연설회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파. 어깨띠를 착용하는 선거운동원의 수(안 제68조제1항제1호)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5인 이내로 정함.

하. 방송연설의 중계방송(안 제71조제12항 및 제82조의2제13항)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함.

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전국연설회(안 제79조제1항)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10인 이내의 전국연설회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연설회는 전국 어디에서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너. 공영방송사의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안 제82조의2제10항)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 하도록 함.

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안 제82조의6제1항)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를 추가하고,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봄.

러.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안 제108조의2 신설)

언론기관 또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고,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함.

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계산방법의 변경(안 제121조제1항제3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3억원에 인구수 곱하기 20원을 더한 금액에서 인구수 곱하기 90원으로 함

버.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안 제135조의2제3항 신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

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회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함.

서. 정책공약집의 판매방법(안 제138조의2제2항)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 시 그 공개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당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함.

어.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 보호 등 (안 제261조제5항, 제262조 및 제262조의2)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회·참관인·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며,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저.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안 제279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함)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조정(안 별표 1)

인구증가성을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일부 조정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0조의3·제65조 및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98호, 2008. 03. 13. 공포】

1. 제정이유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및 제6조)

-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복원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 (2)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됨.

- (3)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나. 피해주민단체(안 제7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주민단체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단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다. 손해보전의 지원 등(안 제8조 및 제9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2) 국제기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손해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査定)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안 제10조)

- (1) 국토해양부 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2) 국토해양부 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유류오염 관련 연구·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방역·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의연금품 특별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8930호, 2008. 03. 21. 공포]

1. 개정이유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국내 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용 목재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수출입 목재 및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하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며,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7조 및 제50조제1항제2호)

- (1) 수입 또는 국내 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부터 병해충이 유입되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의 안전관리가 필요함.
- (2)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

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3)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병해충이 유입되어 퍼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 마련(안 제40조 및 제41조)

- (1) 세계 각국이 수출입용 목재에 대하여 국제 방역기준에 따른 열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수출입용 목재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열처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3) 수출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산 물품의 해외수출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처벌기준 강화(안 제47조 및 제48조)

- (1)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금지품을 수입한 자 또는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3) 처벌기준의 강화로 식물방역질서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 2008. 03. 21. 공포]

1. 제정이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안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안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 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39호, 2008. 03. 21. 공포]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4조의3 신설)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나. 인권교육(안 제6조의2 신설)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신요양시설 등의 설치·개설 제한(안 제12조의2 신설)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도록 함.

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안 제18조의3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우수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퇴원의사의 확인(안 제23조제3항 신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등(안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퇴원등을 시키도록 하는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의 입원 및 퇴원절차를 정비함.

사. 신상정보의 확인(안 제26조의2 신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아. 퇴원 등 사실의 통지(안 제26조의3 신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등 사실을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지하도록 함.

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1)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 여부 및 처우개선 등의 심사를 함으로써 심사건수의 과다로 인하여 심사가 부실해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입·퇴원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 종전의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전환시키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 있는 시·군·구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및 퇴원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행하도록 함.
- (3) 현지 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차. 외래치료명령(안 제37조의2 신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등을 하기 전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입원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강제노동 등의 금지(안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신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의 강요나 폭행·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안 제46조의2 신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40호, 2008. 03. 21공포]

1. 개정이유

의사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감염인)를 진단한 경우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잠재된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규정 신설(안 제3조제5항 신설)

- (1)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감염인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큰 현실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규정을 신설함.
- (3) 감염인을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감염인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염인 진단·검안사실 및 사망의 신고(안 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였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검안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며, 세대주가 보건소장에게 감염인의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함.

다. 감염인 명부의 작성·비치 및 보고의무의 폐지(현행 제6조 삭제)

감염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체계가 복잡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의 보고 및 관리과정에서 감염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크므로, 시·도지사의 감염인 명부의 작성·비치의무와 이에 관한 보고제도를 폐지함.

라. 익명검진제도 도입(안 제8조제4항 신설)

-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감염인의 발견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잠재된 감염인 그룹을 질병관리체계내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검진제도자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2) 이름·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등을 사용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진결과 통보의 제한(안 제8조의2 신설)

검진을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피검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 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바. 치료권고제도의 신설(안 제14조 및 제15조)

- (1) 감염인에 대한 치료지시 및 강제처분제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키며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치료명령을 하기 전에 치료권고를 하도록 하고,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3)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사전적인 지도절차로서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41호, 2008. 03. 21공포]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포상금의 지급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진관리제도 도입(안 제3조제6호 및 제22조의2 신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시·도지사 업무의 이양(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에 관한 시·도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관련조항을 정리함.

다. 품질관리인(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영업자 스스로 품질관리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라. 광고심의 이의신청(안 제16조의2)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함.

마. 포상금의 지급(안 제40조)

무허가영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1천만원의 한도로 제한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8942호, 2008. 03. 21. 공포]

1. 제정이유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진사업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검사항목·검진주기)의 부재 및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검진제도 자체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안 제4조 및 제5조)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의 증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

나.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및 전담 조직 설치(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검진 지침 개발, 건강검진의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위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질 관리 실시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함.

라. 건강검진 정보 보호 및 자료 활용(안 제18조 및 제23조)

국가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건강정책 수립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국가건강검진 업무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마. 건강검진 사후관리(안 제19조)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검자의 정밀검사, 생활습관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8943호, 2008. 03. 21. 공포]

1. 제정이유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및 영양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영업자에 대하여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나.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안 제5조)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관리함.

다. 정서 저해식품의 판매 금지(안 제8조 및 제9조)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담배·술 및 인체의 특정부위의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

라. 광고의 제한·금지 등(안 제10조)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난감 등의 미끼 상품이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을 제한함.

마. 영양성분 표시(안 제11조)

부모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하여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바. 영양성분 색상 표시(안 제12조)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함유된 양에 따라 녹색 등 색깔로 표시하도록 함.

사.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안 제14조)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그러한 제품의 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안 제19조)

어린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식품 생산에 앞장서는 기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안 제21조)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이나 영양 분야 전문가가 없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환경보건법

[법률 제8946호, 2008. 03. 21. 공포]

1. 제정이유

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사용으로 국민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1) 환경보건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2)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 등이 포함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3) 환경보건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안 제11조 및 제12조)

- (1) 국민의 건강이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 (2)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된 새로운 기술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3)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신기술이나 신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위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평가항목 추가(안 제13조)

- (1) 현행 환경성평가제도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함.
- (3)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라.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1) 환경보건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와 국민건강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와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함.
- (3) 환경보건시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세워지고 추진되며,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 관리(안 제23조 및 제24조)

- (1) 어린이는 성인에 비하여 신체발달이 불완전하고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므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며,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3)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안 제28조)

- (1) 환경보건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 (2)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으로 환경보건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67호, 2008. 03. 21. 공포]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 명확화(안 제8조의2 신설)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별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 업무의 혼란이 발생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의 우려가 있음.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시설물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 등록분야에 따라,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

나. 안전점검 등의 하도급 제한(안 제8조의3 신설)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없어 용역의 전부를 저가에 일괄 하도급 함으로써 부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2)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3)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원도급업체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게 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요청 근거 마련(안 제9조의4제2항)

- (1) 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한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부실 점검 및 유지관리의 가능성이 있음.
- (2)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1) 현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시설물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어려움.
-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
- (3) 지정된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를 늘려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주기를 줄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11조의3)

- (1)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만 부실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정밀점검에 대한 부실점검 방지가 어렵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전등급의 지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안전등급의 지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밀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평가의 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 마련(안 제33조의3 신설)

- (1) 이 법의 시설물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 등으로 이러한 국가 주요 시설물의 붕괴 또는 파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고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99호, 2008. 03. 28. 공포]

1. 개정이유

상습적으로 설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승인하도록 하며, 재해 상황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안 제16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하도록 함.

나. 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안 제21조의2 신설)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상황을 기록·보존하는 것은 물론, 피해현장의 공간영상정보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침수흔적도 등 재해 정보의 활용(안 제21조의3 신설)

재해지도, 재해상황 기록 등 축적된 자료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함.

라. 상습설해지역에 대한 대책 등(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 (1)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눈사태·교통두절 및 농·수산물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2)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 내 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내설설계기준을 설정·운영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046호, 2008. 03. 28. 공포]

1. 개정이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폐지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 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하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안 제9조제2항)

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등으로 명료화 함.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한(안 제16조제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하고,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다.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안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안 제21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인정 제품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마. 지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완화(안 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의 제한규정을 완화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2호, 2008. 03. 28. 공포]

1. 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주요 기능에 관한 정보를 서로 연계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사업추진체계,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의 수립(안 제13조 및 제1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시행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안 제19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23조)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57호, 2008. 03. 28. 공포]

1. 개정이유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을 이전하는데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을 원활히 이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의 예산지원(안 제4조)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나.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는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하고,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이전계획 등의 수립(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도청과 같이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지역의 시장·군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라.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안 제16조)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함에 있어 그 실시계획에 대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또한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도 해당 인·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봄.

마.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7조)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바.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조치(안 제30조 및 제31조)

도지사는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전기관의 장은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최근 타시·도 제정조례

1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7
----------	-----

발의년월일 : 2008년 2월 22일

발 의 자 : 오소환 이수정 양창호의원외 34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5년 3월 10일 제정·공포 되었으나 일부조항(제3조 제5호,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소 사유가 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7월 전부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법체계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추가함.(안 제2조제4호)
- 나.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안 제4조제1항)
- 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지원계획의 심의와 세부시행계획의 검토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함.(안 제9조제1항)
- 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여러 상황들과 관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 바. 기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며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시설비”란 급식경비 중 조리실 및 식당의 설치와 개·보수비용, 급식조리기계기구 구입비용 등을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 사. 기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원칙)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각각 “시장”과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
2.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공급방안
2.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방안
4.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방안
5.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료급식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및 영유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등 및 그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및 그 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녀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 경영기획실장 및 관련 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국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의 추천인
5. 교원단체의 추천인
6. 농·축·수산업인 단체 및 농·축·수산업 단체의 추천인
7.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심의 및 제4조제4항의 세부시행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규모 및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방안
3. 급식지원 신청내용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방안
6.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급식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요구한 학교급식 등에 관한 필요 사항

②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감과 구청장 및 학교 등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http://www.smc.seoul.kr>]

2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안

의안 번호	311
----------	-----

발의연월일 : 2008년 2월 21일

발 의 자 : 양승근의원 외 5인

1. 주 문

150만 대전시민에게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병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가. 공공병원은 본인 부담비용을 낮춘 표준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정책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임.
- 나.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을 통해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 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장비 현대화 등의 의료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는 공공병원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각종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정책(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에서 배제되어 적정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라. 따라서 대전광역시 150만 대전시민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타 지역주민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중앙의 지원을 받는 등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함.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안

공공병원은 본인 부담비용을 낮춘 표준적인 의료서비스와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의료복지정책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과거 낙후된 이미지의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가 공공 보건의료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을 통해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 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장비 현대화 등의 의료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타 지역의 공공병원은 과거와 달리 현대화된 시설, 첨단 장비, 친절함을 갖춘 새로운 공공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낮은 본인 부담비용 ▲믿을 수 있는 진료 ▲치료만이 아닌 각종 예방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시는 공공병원 하나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공공보건 의료혜택을 지원할 수 없어 심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현재 일반병원은 많지만 선택진료비 등 높은 본인 부담 비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며, 심야응급 외래진료 이용 불편, 전염병 격리 병동 부족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적 병원 기능을 수행 할 시 차원의 정책적 수단 또한 부재한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2007년 11월 3일, 2008년 1월 10일자 대전일보 기사)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 3군 전염병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

가 2개월 여간 찜질방 등 다중시설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보내진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종합병원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희귀 난치성 질환인 혈우병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에서는 낙후지역인 동구 가오지구에 시립병원 설립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방치되다가 2007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구청이 청사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동구 가오지구 의료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공공병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요 배후도시로서 향후 인구 유입증가 등 모든 면에서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복지가 튼튼한 웰빙 도시가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동구 지역에 병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보건의료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150만 대전시민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타 지역 주민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원은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대전광역시에 공공 병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jeon.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지방예산의 10%인 12조를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에 투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약 10%인 약 12조원을 절감하여 기업물류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투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을 돕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 1단계의 정부기능·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는 제2단계 기능·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 안전망을 확충하고 엄정한 법질서도 확립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전 7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사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활기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앙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계약 제도를 중점 개선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하고,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계약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도 현재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예산 10% 절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공법 적용, 중복 투자 방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함께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그리고 각종 시설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발전교부세」 재원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조직개편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위원회도 정비하기로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도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복지, 문화 관련 조직을 정비하여 대국대과주의로 개편하고, 상수도 등 사업기능은 공사화 또는 민간에 위탁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이양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에 이양하고, 기타 분야는 내년도에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에 이양하거나, 조직은 광역화하고 계층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원회도 전면 재조사 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위원회는 폐지키로 하였으며, 향후 위원회의 남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하였다.

한편,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도 전면 재조사하여 위원회 운영경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감축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연도별, 분야별로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작은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편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개방·공모 확대 운영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 인사권을 제약하며, 정실인사로 호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3개 등급 이상 이동 등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고 내년에는 조직계층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를 제외한 관리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 하도록 하고, 공모기간도 현재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임용절차 과정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이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연금 부족분을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므로 인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고,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 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금 수익 일부를 연금재정에 충당하여 정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한 후 금년 6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 첨단 재난대응체계 마련

풍수해 보험제도를 31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의 영역도 공장·상가 등 재난 사각지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태안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늪장 생계비 지원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앞으로는 생계비 지급기준을 중앙부처가 직접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승레문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성 영상정보와 GIS 등을 활용하여 건물구조, 배관·배선위치, 비상구 등의 정보를 대응기관에 입체적(3D)으로 제공하는 첨단화재 진압시스템을 금년 6월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

국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부터 신호등·표지판 등 불합리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위현장에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하여 불법 시위현장 전면배치기로 하였다.

불법 시위 현장에서 “떼법·정서법” 문화를 청산해 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해 나가는 한편,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어진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선도부처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② 패스트푸드점·커피점, 1회용 컵 보증금이 사라진다

- ◇ 오는 3월 20일부터 컵 보증금을 받지 않되,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는 고객이 1회용 컵을 되가져오는 경우 종전처럼 환불 실시
- ◇ 업계 자율적으로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 등에 컵회수대 설치,

컵을 가져올 경우 사은품 제공, 가격할인제도 등 도입 <TBODY>

- 환경부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였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3월 20일 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부터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박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50~100원의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 고객이 1회용 컵을 구입한 매장으로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장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한편,
 - 개별 업체별로 프로모션 캠페인 운동도 전개토록 하여 고객이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할인쿠폰 또는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 개인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게는 커피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 협약제도를 보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하여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특히, 최근에는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컵 보증금제도의 실효

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되어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바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 중에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계속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처벌 수위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한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강력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종합대책은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원인 분석을 토대로 관리·기술·인식·제도 차원을 망라한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금번 대책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간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단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단일법은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그동안 의원입법,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할 예정이며, 그간 법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을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등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관리가 되지 않았던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의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단계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내·외부 상시점검체제로 개선하고, 취약기관은 감사원 등과 협력하여 별도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는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수준진단 프로그램을 전 중앙·자치단체에 보급·확산하고,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지수로 관리함으로써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공·민간 부문을 통합하는 단일한 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권리 침해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또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근절과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집중점검 대상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금년도 1,000개 기관, 2,000개 사이트)하고, 개인정보 노출시 징계 처분 요구 등 강력 대처기로 하였다.

둘째, 기술·시스템적 기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주민번호 오·남용, 도용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이용시 주민번호대체수단(G-PIN)을 2010년까지 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GPKI) 방식으로 강화하고, 권한의 임의 양도·대여를 금지함으로써 정보 무단유출을 차단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셋째, 교육·홍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이들을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구원 등 각급 교육기관에 ‘개인정보보호과정’을 편성, 전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e-Learning 콘텐츠 개발 등으로 자체 교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담당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침해유형별로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마련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은 적극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손해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넷째, 시의적절한 선제적 법·제도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극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민감정보파일 구축시 개인정보 침해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는 예방적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추후 법제화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2.9%에 불과한 국가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로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금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지침화 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하고, 각급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종합대책에 대한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대책 이행 여부를 연중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4 온천표시가 달라집니다!

온천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되던 온천표시가 3월 24일부터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온천로고를 변경하는 내용의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로써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구 온천표시는 100년 만에 사라지고, 앞으로 허가받은 온천에서는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게 된다.

※ 목욕탕 등에서 온천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천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행안부는 온천로고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온천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온천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3월 24일 충남 덕산 온천에서 원세훈 행안부장관, 온천홍보대사 텔런트 이순재씨와 나문희씨를 비롯하여 전국의 온천경영인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천로고 선포식과 온천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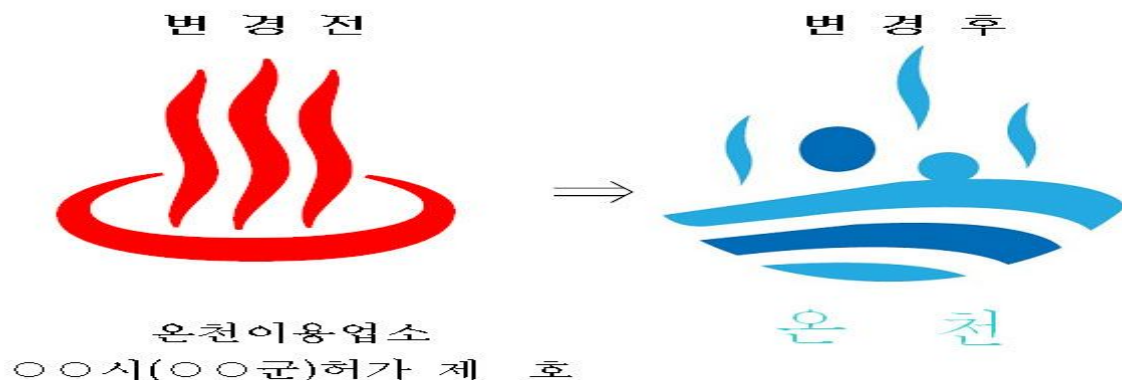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선포식에 이어 온천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행안부는 침체된 온천산업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온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잘 살리는 창의적 발전전략과 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전의 수동적인 온천규제 및 관리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요 창출과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30여개 법령에 걸친 인허가 절차로 온천발전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던 개발단계를 간소화하여 2~3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목욕탕과 차별화된 요양과 치료목적의 국민보양온천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온천표시



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지속적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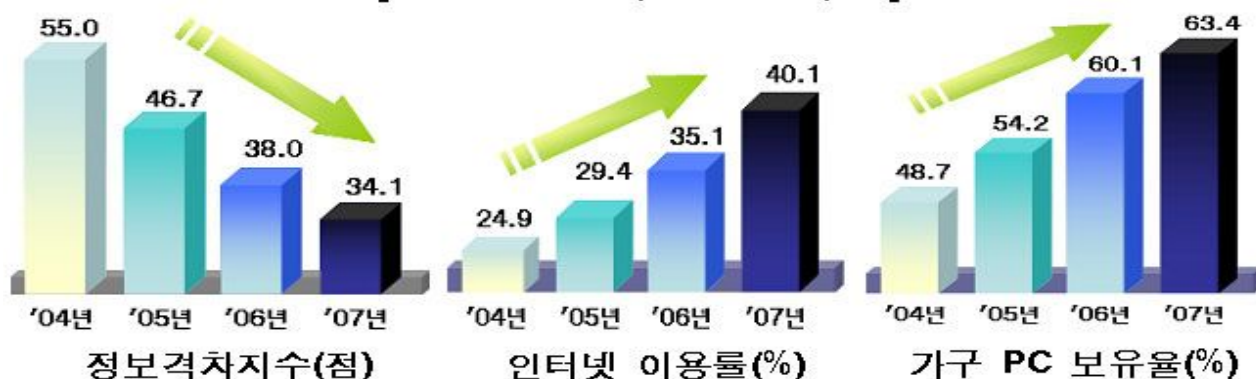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07년9월~12월까지 전국의 일반국민 및 정보소외계층 총 15,000명을 대상으로 「2007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일반국민 대비 '06년 62.0%에서 '07년 65.9%으로 전년 대비 3.9%p 개선되었으며,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04년에 비해서는 20.9%p 개선되어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보소외계층”은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 농어민 등을 말함

※ 정보격차지수('07년 34.1점)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 - 일반국민대비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수준('07년 65.9)}

「2007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보소외계층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07년12월 현재 40.1%로 '06년 35.1%에 비하여 5.0%p 상승하였고, 계층별로는 저소득 52.8%, 장애인 49.9%, 장노년 34.1%, 농어민 3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소외계층의 평균 가구PC 보유율은 '07년12월 현재 63.4%로 '06년 60.1%에 비하여 3.3%p 상승하여, 계층별로는 장애인 69.9%, 저소득 61.3%, 농어민 55.0%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정보격차 개선 추이】



※ 정보격차지수는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간 정보화 수준의 격차이며, 작은 값을 가질수록 정보격차가 개선된 것을 의미

※ 정보격차지수, 인터넷이용률, 가구PC보유율은 정부승인통계(제12071호)로 지정
또한, 전체 정보소외계층 약 1,550만명*의 40%에 해당하는 620만 명은 일반국민 정보화수준의 80%이상('10년까지의 목표치)인 것으로 나타나, 정보소외계층 10명 중 4명은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보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도시·농어촌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 촉진을 위해 웹 접근성 제고 및 보조기기 보급 확대
저소득층 대상 중고PC 보급을 통한 정보접근기반 강화 및 온라인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건강 등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제공을 통하여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 촉진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 제고를 위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지원 및 내고향 IT 봉사단 운영 활성화

또한, 인터넷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민·고령층을 우선적 정보격차해소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전개하고 경로당 등에 중고 PC 보급, IT도우미를 통한 방문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⑥ 행안부, 친기업적 지방세지원 대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Business friendly」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은 6월 30일까지 당장 이행할 6개 과제와 12월 31일까지 추진할 3개 과제로 나뉘어 단계별로 중점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 ①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제 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으며,
- ② 과세관청은 실적위주·책임회피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 ③ 지방세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들의 이해가 어렵고,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246개) 별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납부 부담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 납세협력비용 = 시간비용 + 외부인건비 + 기타(소송 등)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기대책 : '08. 6.30까지 시행

①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의 세부담 경감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08년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상가 등 시가보다 오히려 건물과표가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이를 조사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체조정권(50%범위내)을 부여하여 불합리한 과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세과표 1억원 미만 등 성실·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③ 원격지 납부체계 확대·개선

국세 포털시스템(HomeTax)과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연계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④ 지방세 과세품질 관리제도 도입

과세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과세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과세로 인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원인규명을 하고, 해당 기관에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세를 추징 또는 중과세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예고를 이행하도록 하여 사전에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를 받도록 했다.

⑤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 강화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찾아가서, 법령상 명시된 세제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나, 법령을 잘 몰라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 세무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279개소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국세와 지방세 합동조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지방세 상담과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확대(14→67명)·운영하고, 법령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상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지방세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재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

있는 지방세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 나갈 방침이다.

⑥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및 재산세 분할납부 확대

지방세를 잘못 납부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 기간(연2회)을 정하여 운영키로 했으며, 재산세 고액 납세자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현재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어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 중·장기대책 : '08. 12. 31까지 시행

①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식 변경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마다 각각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불편 해소를 위해,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 신고납부」 토록 하여, 납부하는데 시간적, 경제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지방세법령의 간소·명료화

복잡하고 난해한 지방세법령을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기존의 지방세법령 해석사례인 지방세법운용세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수정·보완하여, 기업 등 납세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지방세법령해석의 통일적 운영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일관성·통일성 있게 적용 되도록 법령해석·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처리하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하여,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과세 전 쟁점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세여부를 사전에 답변토록 함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吳東浩)은 이번 대책이 추진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 과제별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사항을 연중 상시 점검함으로써, 이번 지원대책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고, 경제5단체 및 조세전문기관 등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도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4월부터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제17대 대선공약에 따라 국정과제로 확정된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저소득층을 정부 행정지원 인력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서 매년 소요되는 행정지원인력(약 8,000 ~ 10,000명) 중 10%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지원인력은 현재 각 기관에서 우편물구분원, 통계조사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채용형태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를 통해서도 관할 수급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홍갑 인사정책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추진되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한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또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학계,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4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적용대상, 방법, 비율 등 추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7월부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오는 2009년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⑧ 기초노령연금, 65~70세 대상 2단계 확대 실시

□ 보건복지부는 65~70세 노인(1938.1.1~1943.9.30 生) 약 100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90만명에게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 7월 연금 지급을 위해 2단계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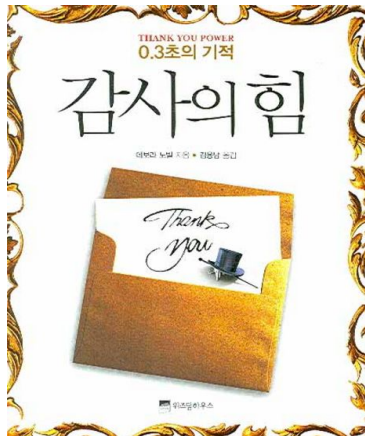
□ 2단계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게 되고,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 이번 2단계 확대사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 또한,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고령인 점이 감안되어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를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 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감사의 힘 저자명 : 데보라 노빌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출판년 : 2008년 페이지 : 228 가 격 : 10,000원
---	---

당신의 가슴이 움직이는 시간 0.3초, 마인드만 전환해도 인생의 99%가 바뀐다. 지금, 전 세계는 ‘감사 캠페인’ 열풍이 불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감사하기’ 행사를 벌이고 있고, 새해를 맞아 한 시에서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감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행복을 좇고 있지만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위대한 성공도 이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 같은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러 사례와 실험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저자는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으며 각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 열쇠라고 주장한다. 감사하는 말만으로도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활기차고 스트레스 적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되며,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지고, 수명이 길어지며, 타인의 호감을 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예를 통해 이 사실을 확증해 나가며 나아가 감사하는 삶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과정은 모호한 전제와 피상적인 감상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로 진행된다. 심리학적 조사와 행동 과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을 당부하며, 2부에서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세상에게, 3부에서는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 바로 자신에게 감사할 것을 강조한다.

식당 웨이터 보조 일을 하던 한 청년이 미국 굴지의 식품 업체 부사장이 된 사연, 불만투성이 샌디가 행복 에너지로 가득한 나날을 살 수 있게 된 과정,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제이크가 바로 그 상사의 자리에 오른 사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앤이 말하는 감사 에너지까지. 이 책의 많은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할 것이다.

또한 마음만으로 감사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노트, 1분만 웃어보기, 감사 편지, 감사 연습, 감사 능력 테스트 등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잊고 지냈던 친구들 혹은 고마움을 제대로 표시해 본 적 없는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 한 통을, 하루하루 감사한 일들을 감사 노트에 적고, 단 1분만이라도 웃을 것을 권한다. 마음을 갖는 것이 구태의연하다고 느껴진다면,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무작정 적어보자.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다. 감사한 일들을 노트에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느새 주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삶을 대하는 마인드가 바뀔 것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 행복의 99%는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그것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는 무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동안 모른 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감사 연습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실험 참가자들의 놀라운 변화 10가지!

-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졌다.
- 예전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겼으며,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 주위 사람들로 부터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결단력이 강해졌고,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다른 사람들로 부터 관대하고 친절 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웠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